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기획재정부
장

김 동 연

●대통령령 제28512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세율
호	소호			
0301		활어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앙귤라(<i>Anguilla</i>)종]		
		3. 기타	실뱀장어(양식용의 것은 제외한다)가 아닌 것	20%
0301	99	기타		
		1. 돔		28%
		나. 기타		또는 2,052원/kg 양자 중 고액 (율)
		2. 농어		
		나. 기타		28%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멸치[엔그라울리스(<i>Engraulis</i>)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i>Scomber scombrus</i>)·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스콤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거(<i>Rastrelliger</i>)종], 삼치 [스콤버로모리스(<i>Scomberomorus</i>)종], 전갱이[트라커러스(<i>Trachurus</i>)종], 줄전갱이류 [카랑크스(<i>Caranx</i>)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i>Rachycentron canadum</i>)], 병어 [팜푸스(<i>Pampus</i>)종], 꽁치 [콜로라비스 사이라(<i>Cololabis saira</i>)], 가라지 [데캡테러스(<i>Decapterus</i>)종], 열빙어 [말로투스 빌로서스(<i>Mallotus villosus</i>)],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점다랑어 [유티너스 아피니스(<i>Euthynnus affinis</i>)], 버니토 [사르다(<i>Sarda</i>)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 [이스티오포리대(<i>Istiophoridae</i>)].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59	기타	뽕치[콜로라비스 사이라 (<i>Cololabis saira</i>)](머리부 터 꼬리까지의 전체 길이가 2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	26%
0303	6	브 레 그 마 세 로 티 대 (<i>Bregmacerotidae</i>)과·유클리티대 (<i>Euclichthyidae</i>)과·가디대 (<i>Gadidae</i>)과·마크로우리대 (<i>Macrouridae</i>)과·멜라노니대 (<i>Melanonidae</i>)과·메르루치대 (<i>Merlucciidae</i>)과·모리대 (<i>Moridae</i>)과·무라에놀레피디대 (<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 다 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 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67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i>Theragra chalcogramma</i>)]		22%
0303	69	기타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i>Theragra chalcogramma</i>) 는 제외한다]	22%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 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 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 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 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 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6	9	기타		
0306	95	새우류	다음 각 호의 것 1. 냉수성(冷水性) 새우류 [판달리스(<i>Pandalus</i>)종 · 크란곤 크란곤(<i>Crangon crangon</i>)](염장이나 염수 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그 밖의 새우류(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 다)	32% 32%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 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 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 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 거 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 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 다]		
0307	4	갑오징어와 오징어		
0307	43	냉동한 것		
		2. 오징어		
		가 . 옴 마 스 트 레 페 스 (<i>Ommastrephes</i>)종 · 로리고 (<i>Loligo</i>)종 · 노트토다루스 (<i>Nototodarus</i>)종 · 세피오투디 스(<i>Sepioteuthis</i>)종	한치 · 꼴뚜기 및 연육은 제 외한다.	22%
		나. 기타	한치 · 꼴뚜기 및 연육은 제 외한다.	22%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5	버섯과 송로(松露)		
0709	59	기타		
		2. 기타	표고버섯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3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i>Auricularia</i>)종], 젤리균류[트렐렐라(<i>Tremella</i>)종], 송로(松露)		
0712	39	기타		
		1. 버섯		
		나. 표고버섯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 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02	1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	19	기타 2. 당면		26% 또는 206원/kg 양자 중 고액(율)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	90	기타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낱알모양의 쌀로서 찌거나 삶은 것	50%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	90	기타	다음 각 호의 것 1. 고추장 2.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퍼센트 이상인 것	32% 45%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	1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	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 나프타		0.5%
		5. 엔지엘(NGL)		0.5%
2710	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1.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라. 나프타		0.5%
		마. 엔지엘(NGL)		0.5%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만,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4412	33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i>Alnus</i>)종]·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i>Fraxinus</i>)종]·너도밤나무[파구스(<i>Fagus</i>)종]·자작나무[베틀라(<i>Betula</i>)종]·체리나무[프루누스(<i>Prunus</i>)종]·밤나무[카스타네아(<i>Castanea</i>)종]·느릅나무[울무스(<i>Ulmus</i>)종]·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i>Eucalyptus</i>)종]·히커리[카르야(<i>Carya</i>)종]·칠엽수[아에스쿨러스(<i>Aesculus</i>)종]·라임[틸리아(<i>Tilia</i>)종]·단풍나무[아서(<i>Acer</i>)종]·참나무[코커스(<i>Quercus</i>)종]·버즘나무[플라타너스(<i>Platanus</i>)종]·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i>Populus</i>)종]·아까시나무[로비니아(<i>Robinia</i>)종]·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i>Liriodendron</i>)종]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i>Juglans</i>)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34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3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 상인 것	10%
4412	9	기타		
4412	99	기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 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 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率)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17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4개 품목 중 산업피해가 계속 우려되는 찰쌀, 냉동명태 등 12개 품목에 대한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조정관세율과 세율 불균형의 시정이 계속 필요한 나프타에 대한 0.5퍼센트의 조정관세율을 2017년도와 같이 유지하고,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은 냉동콩치의 조정관세율은 2퍼센트포인트 인하하는 등 총 14개 품목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김동연

●대통령령 제2851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